

카메룬 (Cameroon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	근로자	-
보험료율 (근로자 / 사용자)	8.4% (4.2% / 4.2%)	8.4% (4.2% / 4.2%)	-
노령연금 수급요건	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최종 10년 중 60개월 이상을 포함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, 60세	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최종 10년 중 60개월 이상을 포함 납부기간 180개월 이상, 60세	-
노령연금 지급률(40년)	55%	55%	-
일시금	최종 3년 또는 5년 간 가입자 월 평균 소득 x 가입연수	최종 3년 또는 5년 간 가입자 월 평균 소득 x 가입연수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69년(연금, 1974년 시행), 2014년(임의가입 확대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, 이전에 당연적용 대상자였던 자, 기타
- 특별제도 : 공무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월 가입소득의 4.2%; 임의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임금의 8.4%
 - 평균 월 임금은 임의가입자와 국가사회보험기금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(36,270 CFA francs)이며 상한소득은 750,000 CFA francs 임

- 자영자
 - 월 평균임금의 8.4%
 - 평균 월 임금은 임의가입자와 국가사회보험기금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됨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(36,270 CFA francs)이며 상한소득은 750,000 CFA francs 임
- 사용자
 - 임금 총액의 4.2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(36,270 CFA francs)이며 상한소득은 750,000 CFA francs 임
- 정부 : 없음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급여
 - 노령연금
 -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최종 10년 중 60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60세 도달자
 - 질병, 출산 또는 산재급여를 받는 기간 등과 같이 특정 조건 하에 납부로 인정될 수 있음
 - 조기연금 :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최종 10년 중 60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납부된 또는 크레딧 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50세 도달자
 -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
 - 상호협정에 의해 해외송금 가능
 - 노령수당
 -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납부된 또는 크레딧 기간이 180개월 미만인 60세 도달자
 - 질병, 출산 또는 산재급여를 받는 기간 등과 같이 특정 조건 하에 납부로 인정될 수 있음
 - 조기노령수당 : 납부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납부된 또는 크레딧 기간이 180개월 미만인 50세 도달자
 - 고용은 중지되어야 함
- 장애급여
 - 장애연금
 - 정상퇴직연령 미만이고 소득활동능력을 66.66% 이상 상실한 것으로 판정받았으며 장애 발생하기 전 최종 12개월 중 6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 이어야 함. 업무무관 사고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간 요건 없음
 - 상시간병수당 : 가입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상시간병이 요구되는 경우 지급
 - 장애연금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중지되며 상시간병보조금 등 포함하여 동일한 금액의

노령연금으로 대체됨

- 상호 협정에 의해 해외 지급 가능

○ 유족급여

•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권이 있었거나 납부된 또는 크레딧 기간이 최소 180개월인 경우 지급
- 질병, 출산 또는 산재급여를 받는 기간 등과 같이 특정 조건 하에 납부로 인정될 수 있음
- 수급가능 유족 : 유족배우자(연령제한 없음), 14세 미만 자녀(건습생인 경우 18세, 학생 또는 장애인인 경우 21세), 피부양부모, 수급가능한 유족이 없는 경우 다른 친인척
- 배우자의 연금은 재혼 시 중지됨

• 유족청산금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수당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지급
- 수급가능 유족 : 유족배우자(연령제한 없음), 14세 미만 자녀(건습생인 경우 18세, 학생 또는 장애인인 경우 21세), 피부양부모

• 장제비

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었거나 또는 노령수당 수급권이 있었으며 유족연금 또는 유족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연금

- 최종 3년 또는 5년 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(둘 중 많은 금액)의 30%에 180개월을 초과 하는 납부기간 12개월 당 1%씩 가산한 금액 지급
- 월 최저연금액 : 법정 월 최저임금(36,270 CFA francs)의 50%
- 월 최대연금액 :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%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 산정방식과 동일

• 노령수당

- 가입기간 12개월 당 가입자 월 평균소득을 곱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
- 조기노령수당 : 노령수당 산정방식과 동일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

- 최종 3년 또는 5년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(둘 중 많은 금액)의 30%에 180개월을 초과 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12개월 당 1%씩 가산한 금액 지급. 가입자의 정상퇴직연령보다 일찍 청구된 1년 당 6개월씩 가입기간으로 인정됨
- 상시간병수당 : 장애연금액의 40%

- 유족연금
 - 배우자연금
 -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 지급
 - 수급 가능한 미망인이 한 명 이상인 경우 연금은 균분 지급됨
 - 고아연금
 -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5%를 각 고아에게 지급. 완전고아인 경우 각 완전고아에게 40% 지급
 - 피부양부모 연금
 -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%를 각 수급자격이 있는 부모에게 지급
 - 기타 수급가능 유족
 - 유족배우자, 고아 또는 피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연금은 기타 친인척에게 균분 지급됨
- ※ 최대 유족급여 합산액은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유족수당 : 납부된 또는 크레딧 납부기간 6개월 당 사망자의 최종 3년 또는 5년 간 월 평균소득의 30%씩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. 유족이 1명 이상인 경우 일시금 균분 지급
- 장제비 : 장례비용은 최대 1,200,000 CFA francs 까지 지급됨

7

관리운영기관

- 노동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)
 - 전반적 감독
 - www.mintss.gov.cm
- 국가사회보험금고(National Social Insurance Fund)
 - www.cnps.cm
 - 노.사.정 위원회와 위원장의 관리 하에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